

2017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인천광역시

목 차

- I 추진경과 및 현황
- II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 III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세부사항
- IV 협조사항



I. 추진경과 및 현황 등

1. 추진배경

아동학대 근절대책('15.1월)의 주요내용으로
시설개방 · 부모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추진('15년~)

2. 추진 경과 및 현황

법률개정

- 열린 어린이집 문화 조성을 위해 **보호자의 참관권 규정**(법 제25조의3)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개최(분기별 1회 이상), 부모비율 50% **확대**
(법 제25조, '15. 9. 19. 시행)

가이드라인

-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제작 및 어린이집 배포('15.7월)
(개념) 어린이집이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 가능
(특성) 공간의 개방성, 참여의 자발성, 기회의 다양성, 운영의 융통성
(환경구성) 물리적 환경구성 및 인적 환경 조성
(주요활동) 부모교육, 의사소통, 부모참여 확대, 가정연계활동
(점검 및 평가) 자체점검, 실행점검, 만족도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공

(복지부) 우수 열린어린이집

- 시도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에서 매년 12월에 선정
- '15년 92개소 → '16년 100개소 (30개소 장관상 수여)

(인천시) 열린어린이집

- 군·구의 추천을 받아 시에서 매년 10월에 선정
- '15년 10개소 → '16년 30개소 (인천형24개소, 복지부 우수형 6개소)

전국 사례

지자체장(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이 열린어린이집을 선정

- 지자체 선정은 5개 지자체, 총 326개소에 불과('17.3월 현재)
 - 인천광역시 24개소*, 부산 영도구 5개소, 성남시 216개소**, 오산시 29개소, 남양주 52개소
 - * 인천광역시: 시(시육아중) 주관으로 '16. 12월 열린어린이집 활동성과를 기준으로 선정
→ 인증서 발급, 지도점검 면제(1회), 시장 표창 등 실시
 - ** 경기 성남시: 부모참여 프로그램과 투명(공개)성 중심으로 성남형어린이집 선정
→ 지정서 수여 및 현판제공, 지도점검 면제, 교재교구비 지원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열린어린이집의 날), 울산(품다U열린보육), 인천 연수구(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사업)

2. 추진 경과 및 현황

열린어린이집현황('17.3월기준)

구분	시군구	어린이집수	열린어린이집 선정	
			복지부	지자체
합 계	228	41,084	100	326
서울특별시	25	6,368	15	0
부산광역시	16	1,937	9	5(영도구)
대구광역시	8	1,483	3	0
인천광역시	10	2,231	6	24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5	1,238	2	0
대전광역시	5	1,584	2	0
울산광역시	5	895	2	0
세종특별자치시	1	250	1	0
경기도	31	12,120	20	297*(성남 216, 오산 29, 남양주 52)
강원도	18	1,180	10	0
충청북도	11	1,208	4	0
충청남도	15	1,974	8	0
전라북도	14	1,562	3	0
전라남도	22	1,251	9	0
경상북도	23	2,102	4	0
경상남도	18	3,158	0	0
제주도	1	543	2	0

* 경기 성남시는 부모참여 프로그램과 투명(공개)성 중심으로 성남형어린이집으로 지정서를 수여한 것으로 공간 개방성은 고려하지 않음

3. 운영 및 보완 필요사항

지원체계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가이드라인, 우수사례, 부모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센터 활용 미흡
→ 육아종합지원센터(시, 군·구) 중심으로 사업 지원 및 관리

홍보

-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중심 가이드라인만 제시되고, 부모용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모참여 및 홍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 대상별(어린이집, 부모) 가이드라인 제작. 배부, 적극적 홍보

인센티브

- 우수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부여, 현판제공, 부모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제외('17년 신설)에 한정 됨
→ 지자체 국고보조 없는 비예산사업으로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확대

Ⅱ.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1. 추진목표

목 표

지자체 중심의 열린어린이집 지정·활성화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추진 과제

과 제

1.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제공

2. 열린어린이집
지정·운영

3. 열린어린이집
지원·홍보

세부 과제

- ①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부모, 어린이집)
제작·배포
- ② 열린어린이집 지정·재지정 관리방안 제시

- ① 지자체형(인천형) 열린어린이집 지정·운
영(인천 매년 군·구별 5개소 이상, 50개소
→ 전국 1,150개소)
- ② 우수(선도)형 열린어린이집 지정
(매년 100개소, 복지부)

-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시, 군·구)를 통한 열린
어린이집 육성·지원
- ②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연계 등 인센티브
및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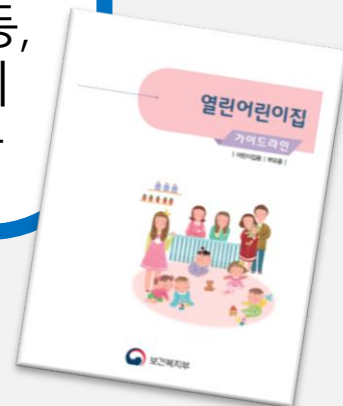
①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제공

어린이집용

- 열린어린이집 개념과 특성, 환경구성, 운영 등을 세부적으로 제공.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15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실행 등을 보완, 활용

부모용

- 열린어린이집 개요, 참여프로그램* 소개 및 방법, 참여자세 등을 알기 쉽게 작성·제공
- *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참여행사, 봉사활동, 의사결정자/평가자로의 참여, 주요 질의사항 등



①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제공

< 열린어린이집 유형별 선정·관리기준(안) >

구분	지방자치단체형(인천형)	우수(선도)형(복지부)
개념	어린이집의 구조,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형 보다 강화된 어린이집 개방성과 부모의 참여가 보장된 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어린이집
지정권자	시 또는 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및 재지정	(신규) 매년 군구별 5개소 이상, 50개소 (복지부: 전국 1,150개소) 지정 (재선정) 기존 선정된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단체형 선정요건 유지 시 우선 재지정하여 우수(선도)형 모델로 확산 유도	지자체형 중에서 매년 시도 추천을 받아 우수(선도)형으로 선정(100개소)·포상
지정 취소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한 시장이 지정 취소 조치	지자체형이 지정 취소되는 경우에는 우수(선도)형도 취소한 것으로 간주

①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제공

< 열린어린이집 유형별 선정·관리기준(안) >

구분		지방자치단체형 (인천형)	우수(선도)형 (복지부)	
지정요건	공간 개방성	참관실, 창문, 부모, 공용공간 등		
	프로그램	신입원아부모 오리엔테이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부모 개별상담	연 2회 이상	연 2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분기별 1회
		부모교육	연 2회 이상	분기별 1회
		열린어린이집의 날	부모참여 프로그램, 분기별 1회	부모참여 프로그램 월 1회
		부모만족도 조사	연 1회	연 2회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연중	연중
		기타	지자체 자체선정 기준	우수프로그램 심의·반영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지자체형

- ▶ 전국 시, 군, 구 (230) 별 5개소 이상 (1,150개소)을 시 또는 군수,구청장이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지역사회 모델로 확산
- 매년 1,150개소를 지정하여 향후 5년 내에 5,750개소까지 확대·운영
- 다만, 지자체가 지자체형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군·구별 5개소를 초과하여 선정하는 경우에도 지자체형으로 선정 가능

우수형

- ▶ 지자체형(인천형)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되는 우수(선도)형을 매년 100개소 지정·포상하여 우수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 유도
- 지자체형(인천형) 중에서 매년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이 지정

③ 열린어린이집 지원·홍보

운영지원

인센티브

홍보

- **육아종합지원센터(시 및 군·구)를 통해 열린어린이집 지정·운영 지원**
 -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함
- ※ 가이드라인 설명회(1회)
 - 컨설팅 희망 수요조사·분기별 1회 컨설팅·상담 지원
 - 어린이집 부모교육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자료 제공
 -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연중)

2. 추진과제

③ 열린어린이집 지원·홍보

운영지원 인센티브 홍 보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점검
신규 선정시 지자체별 특성화지표^(16년)에서 기본 항목 및 배점 신설^(17년)로 공공형 선정과 연계 강화 - 복지부 지정 우수(선도)형 10점, 지자체(인천형) 지정 지방자치단체형 5점을 신규 선정 시 필수 부여	재위탁 심사기준에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사항 반영 예정	열린어린이집 지정기간 동안 부모모니터링('17.3월~) 및 지자체 지도점검('17.7월~) 제외 조치 - 정기지도·점검은 제외하되, 민원 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열린어린이집은 지도점검 가능
보조교사	포상	지자체 평가(복지부 → 지자체)
보 조 교 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복지부 「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열린어린이집 원장·교사에 대해 우선 추천·포상 추진 - 인천시는 시장표창 및 인센티브 확대 검토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시, 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실적을 '17년 보육사업 지자체 평가에 반영 - '17년 시·군·구(230)별 5개소 이상 선정. 운영하되, 어린이집 수가 20개소 이하의 군·구는 3개소 이상 선정(평가기준) - 우수형 선정시 시도별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수*, 지자체형 운영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배정. 선정 • 지자체형 선정요건(공간개방성, 프로그램, 지자체 자체선정기준) 미준수시 지자체형으로 간주하지 않음

③ 열린어린이집 지원·홍보

운영지원

인센티브

홍보

현장참여

기관장의 열린어린이집
참관 및 현장참여
(10~12월)

→ (인천시 9~11월)

- ❖ 기관장(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이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하여, 참관 및 영유아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등 홍보 실시

기획보도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및 국내외
선도모델을 심층적으로 소개하는 기획
보도 추진(10~12월)

→ (인천시 10~11월)

보도자료

우수(선도)형 열린
어린이집 결과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12월)

→ (인천시 10~11월)

Ⅲ.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세부사항

대 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형과 우수(선도)형으로 참여 가능

제 외

선정 제외 공통기준이며,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선정제외 요건 추가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⑦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 등이 제기되어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2. 선정 기준

선정 기본요건

구분	지방자치단체형	우수(선도)형
1. 공간 개방성	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공간 개방성을 1개 이상 설치	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공간 개방성을 1개 이상 설치
2. 프로그램		
-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 부모 개별상담	연 2회 이상	연 2회 이상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 부모교육	연 2회 이상	분기별 1회
- 부모참여프로그램 (열린어린이집의 날)	분기별 1회	월 1회
- 부모 만족도 조사	연 1회	연 2회
- 부모 어린이집 참관	연중	연중
3.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인천시)	우수프로그램, 아동권리 존중교육(아동학대 예방 교육 포함), 육아종 교육 참여도(5월~8월중/ 교육 4회 참여도)	-
4. 우수 프로그램	-	○

2. 선정 기준

세부 선정기준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기준 우수 프로그램

선정 항목	지자체형	우수형	비고
총 점	100	100	
1. 개방성	30	30	
• 공간 개방성	15	15	
- 참관실(관찰실)	15	15	※ 가정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한 경우 10점 배점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10	10	
-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	7	7	
•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5	5	
• 정보 공개	5	5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온라인 소통 창구	5	5	
-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SNS 등 운영			

※ 지자체는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점수 상위 순으로 지자체형을 선정함

2. 선정 기준

공간 개방성

❖ 사진제공: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어린이집



관찰실(일방경)



보육실 문 투명 창

2. 선정 기준

공간 개방성

❖ 사진제공: 세종시 어진어린이집



참관실



보육실 문 투명 창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2. 선정 기준

부모 공용공간

❖ 사진제공: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어린이집



부모 상담실



부모 대기실

2. 선정 기준

부모 공용공간

❖ 사진제공: 세종시 어진어린이집



부모 대기실



부모 상담실

2. 선정 기준

세부 선정기준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기준 우수 프로그램

선정 항목	지자체형	우수형	비고
2. 참여성	40	40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연1회 이상)	4	4	
•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4	4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4	4	
• 부모교육			
- 지자체형: 연 2회	4		
- 우수형: 분기별 1회		4	
• 부모참여 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 날' 운영)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10		
- 우수형: 월 1회 이상		10	
• 부모만족도 조사			
- 지자체형: 연 1회	4		
- 우수형: 연 2회		4	
•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연중 운영)	10	10	

2. 선정 기준

세부 선정기준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기준** **우수 프로그램**

선정 항목	지자체형	우수형	비고
3. 지속가능성	10	10	
•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2회)	4	4	
•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3		
- 우수형: 연 2회		3	
•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3		
- 우수형: 월 1회		3	
4. 다양성	10	10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5	5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5		
- 우수형: 월 1회		5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지자체형)	10	-	
6. 우수 프로그램(우수형)	-	10	

2.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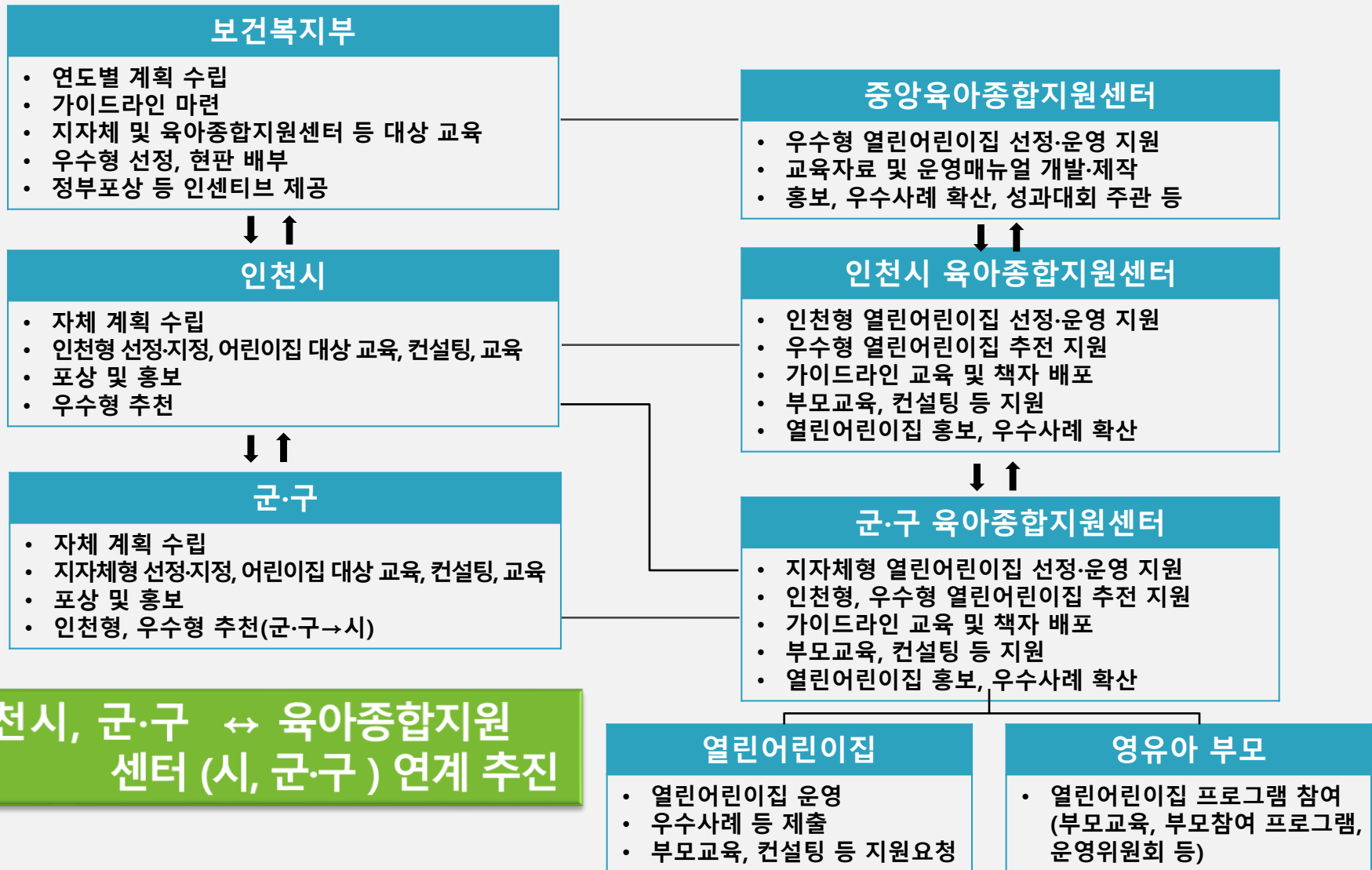
세부 선정기준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기준** **우수 프로그램**

선정 항목	지자체형	우수형	비고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지자체형)	10	-	
• 우수 프로그램(우수형 기준 적용)	5	-	
• 아동권리존증교육(아동학대예방 교육 포함)		-	
- 분기별 1회	3	-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군·구)교육 참여율			
- 5~8월 중 지정교육 4회 참여도(1회/0.5점) * 지정교육 : 표준보육과정, 열린어린이집 설명회 클로버부모교육, 가정내 놀이환경점검부모교육	2		
6. 우수 프로그램(우수형)	-	10	

3. 관리체계

열린어린이집 운영관리 체계



3. 관리체계

☆ 주관: 인천시, 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군·구)지원

설명회

어린이집 대상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설명회(1회 이상)
개최

설명회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희망조사를 실시하고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컨설
팅·상담 지원

컨설팅

교육,
홍보

교육, 홍보

부모교육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료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연중)

4. 선정절차

선정방법

선정공고

선정심사

선정·지정

지자체형

- 인천시 또는 군수,구청장은 **군·구별 5개소 이상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을 선정·지정함**. 다만, 어린이집 수가 20개소 이하의 군·구는 3개소 이상 선정
- 어린이집 종류 및 규모별 균형 있게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계획에 반영
- 인천시는 지자체형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군·구별 5개소를 초과하여 선정하는 경우에도 지자체형(인천형)으로 선정·운영

우수형

- 복지부장관이 지자체형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되는 **우수(선도)형을 매년 100개소 지정·포상**
- 지자체형 선정요건(공간 개방성, 프로그램,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미준수 지자체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우수형으로 지정하지 않음
- 우수형 선정 시 시도별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수, 지자체형 운영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배정·선정

4. 선정절차

선정방법

선정공고

선정심사

선정·지정

선정공고

지자체의 장(시 또는 군수·구청장)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또는 사업계획을 통보 함

선정심사

선정계획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선정 심의 절차 진행

참고사항

예) 지자체형(군·구) 심사에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선정위원'으로 참여 가능

→ 군·구 지자체형 형평성 조율

→ 군·구센터가 미설치 된 지역의 지자체형 선정 시 지원

4. 선정절차

선정방법

선정공고

선정심사

선정·지정

지자체형

- 매년 10월에 지자체장이 선정. 지정서 배부, 지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선정된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정서 반드시 배부(지정서 미배부 시 미 지정으로 함)

우수형

- 매년 11월에 지자체형 중에서 시장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이 12월 선정, 선정한 날로부터 익년도 10월 31까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하며 현판 배부

4. 선정절차

선정방법

선정공고

선정심사

선정·지정

<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정 절차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5월)

인천시 (시 육아종) → 군·구(군·구육아종)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컨설팅, 부모교육
(5월~) 인천시 (시 육아종) → 군·구(군·구육아종)



열린어린이집 선정 공고, 접수, 추천(8월~)
인천시 (시 육아종) → 군·구(군·구육아종),
→ 인천형, 우수형 추천(군·구 → 시)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정통보(12월)

(복지부 → 인천시 → 군·구 → 어린이집)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대상기관 통보(11월)

(인천시 → 복지부)



인천형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정서 통보
(10월) (인천시 ↔ 군·구 → 어린이집)
→ 선정위원회 구성(시, 시육아종, 전문가)

5. 재선정

지자체형

- 매년 10월에 지자체장이 신규 선정시 기존 선정된 어린이집이 지자체형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함
- 다만, 선정 기본요건의 공간 개방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하지 않음
- 지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로 함(신규와 동일)

우수형

- 매년 11월에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이 12월 선정
- 선정한 날로부터 익년도 10월 31까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하며 현판 배부
- 전년도 선정된 우수형의 경우 금년도에 시·도지사는 재추천 가능 함

취소권자

시장, 군·구청장

취소사유

공통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정취소 사유 추가 가능

-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경우
-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⑦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 ⑧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정지
- ⑨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의 자격취소
- ⑩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⑪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단,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함)
- ⑫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 ⑬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6. 지정취소

취소절차

- 열린어린이집 지정권자는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통보 실시
- 시장 지정권자인 경우 군수·구청장은 지정취소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서면보고하고 시가 취소 절차 진행
-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이 선정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도 취소한 것으로 간주 함
- 군수·구청장은 지정 취소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조치
 - 지정취소일은 지정취소가 확정된 날로 함

운영포기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열린어린이집 운영포기 가능
- 해당 어린이집은 지정취하원을 해당 지정권자(시장, 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해당 지정권자는 지정취소 통보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IV. 협조사항

➤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군·구, 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7.5월)

- 부모용·어린이집용으로 구분,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 열린어린이집 선정·재선정 기준 제시

➤ 열린어린이집 선정 가이드라인 교육 및 간담회

(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군·구, 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군·구, 어린이집 원장대상으로 '17년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등 선정 가이드라인 교육 개최, 컨설팅 수요조사

(5.24(수) 09:30, 인천시청 대회의실, 본관 2층)

-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시, 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5.24(수) 11:00, 인천시청 어학실, 지하 1층)

- 열린어린이집 참여 확산을 위한 부모 교육(예정)

(6.14(수) 10:00, 틈 문화창작지대 다목적홀)

➤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시, 군·구, 육아종, 5월)

- 시 및 군·구 자체 열린어린이집 계획 수립·통보(5월)
- 시 및 군·구 주관(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 개최(5월),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희망조사를 실시하고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컨설팅·상담지원
- 부모교육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료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연중)

➤ **지자체형(인천형) 열린어린이집 선정**(시, 10월)

- 지자체형(인천형)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절차, 선정기관수 등을 준수하여 '17.10월까지 선정. 지정서 반드시 배부
- 지자체형(인천형) 선정 및 우수형 추천시 세부 선정기준의 참여성 프로그램 평가기준(분기·월별)은 사업시행 통보('17.4월)를 감안하여 평정기간을 '17.5~10월까지로 할 수 있음(지자체 판단)

감사합니다.